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5

발의연월일: 2021. 1. 28.

발 의 자:추경호·한무경·김승수

서정숙 · 김상훈 · 양금희

김용판 · 정희용 · 강대식

김석기 · 김영식 · 구자근

조명희 · 임이자 · 홍석준

박형수 · 김형동 · 金炳旭

송언석 · 김정재 · 이만희

윤재옥 • 류성걸 • 윤두현

의원(24인)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 인구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군 공항이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해 국가 재정부담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해소하고 국방 전투력 강화 등을 위하여 대구 군 공항이전사업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군·민항이 공동 이용하고 있는 군 소유의 활주로 부지 등이 이전되는 군 공항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매각재산에 포함되어 개발되므로 대구 민간공항의 이전은 불가피한 사항임.

또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부터 안전하고

유사시 해안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남권 및 중부내륙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함.

아울러 영남권 및 중부내륙의 주요 도시와 대구경북 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지역의 미래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경북 민간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 신공항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류·여객 중심의 대구경북 신공항을 경북 군위군, 의성군 일원에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대구경북 신공항은 물류·여객중심의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 항으로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조성함(안 제3조).
- 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 바.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의 우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제27조까지).
- 사.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및 종합 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 조).
- 아.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여객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구경북 신공항"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이전하는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일원에 건설되는 민간국제공항(이하 "신공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관문공항"이란 국가중추공항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송분담률 이상으로 여객 및 화물수송을 처리하는 공항을 말한다.
- 3. "신공항 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
 - 나.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 로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의 시설등의 조성
- 라.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 구축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건설
-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공항을 조성하여야 한다.
 - 1.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중장거리 운항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이에 부합하는 물류·여객처리시설 건설이 포함된 관문공항
 - 2. 영남권 및 중부내륙의 주요 도시로부터 신공항까지에 이르는 도 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
 -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4. 군 공항 이전과 동시에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조기 건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 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 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제3조제4호에 따른 개항 목표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공항 건설 등

- 제7조(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한다.
-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여야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현황 분석
-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수요전망
- 3.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규모 및 배치
- 5. 건설 및 운영계획
- 6. 재원조달계획
- 7. 환경관리계획
- 8.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9조(사업시행자) ① 신공항 건설사업의 개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 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 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 4. 공정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기간
- 5. 연도별 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 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 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 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 정·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

- 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 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

-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 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 2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2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 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 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12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 건설사업을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라한다)를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3장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

- 제14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 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인프라 등 관련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제1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 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 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하천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환경보전법」,「공유수면 관리 및매립에 관한 법률」,「환경개선비용 부담법」,「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있다.
- 제1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신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신공항 건설 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등의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 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 야 한다.

- 제20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신공항 건설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있다.
- 제22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3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

- 역 관련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4조(지역기업 참가 및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참여)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 및 공항운영자는 신공항건설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 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 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 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 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제26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입주외국 인투자기업(산업·연구, 관광·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공항 건설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7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있다.
- 제28조(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및 배후지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9조(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의 설립

- 제30조(공항공사의 설립)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인인 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31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
- 제32조(공사의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의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신공항 건설 지역의 시·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34조(승인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 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10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 가능하게 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